

# 협약서

인천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와 KOTRA인천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는 『2026 인천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이하 “수출상담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2026 인천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 관련 “항만공사”와 “지원본부”가 “수출상담회”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수출상담회” 추진을 위한 협약기간은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

- ① “수출상담회”의 진행을 위한 사업비는 금 20,000,000원 (금 이천만 원, 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항만공사”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에 출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본부”에게 위 사업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수출상담회” 종료 후 “지원본부”가 “항만공사”에 사업결과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항만공사”가 제3항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급한다. “지원본부”는 “항만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의 예산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항만공사”는 “지원본부”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결과 및 사업비 지출내역이 사업의 예산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재단”을 통해 제1항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 (사업의 내용) “지원본부”는 참가업체 선정, 배정 및 마케팅 사업지원을 수행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통보) “지원본부”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협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항만공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항만공사”와 “지원본부”는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쌍방 또는 일방이 특별한 사정없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본 협약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서면을 통해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 ① “지원본부”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대외무역법」 및 관련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신의성실의 원칙) “항만공사”와 “지원본부”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9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며,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비밀유지) “항만공사”와 “지원본부”는 협력과정을 통해 인지한 상대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와 관련되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언론공개 및 학술지 게재,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항만공사”와 “지원본부”가 본 협약서로 협약을 맺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직인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13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 경 규



KOTRA인천지원본부  
본부장 김 삼 수

